

배우자로부터 폭력 (DV) , 스토키 행위 등, 아동학대 및 이것들에 준하는 행위의 피해자는 신고 등에 의해 주민기본대장의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배우자로부터의 폭력 (DV) , 스토키 행위 등, 아동학대 및 이것들에 준하는 행위의 피해자 (이하 「DV 피해자 등」 이라고 함.) 분은 시구정촌에 대해서 이하의 지원조치 실시 신청 등을 통해서 가해자 등에게 주민기본대장의 일부의 사본 열람 및 주민표사본 교부 등에 대해서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것은 살고 계시는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【지원조치 개요】

##### 1 목적

DV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기본대장 일부의 사본 열람 및 주민표사본 등의 교부 및 호적 부표의 사본 교부에 대해서 부정한 목적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.

##### 2 신고 접수

시구정촌장은 1 에 열거한 DV 피해자 등으로부터 3 에 열거하는 지원조치의 실시를 원한다는 신청을 접수합니다. 신청을 접수한 시구정촌장은 지원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경찰,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, 아동상담소 등의 의견을 듣고 확인합니다.

##### 3 지원조치

가해자가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의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해서 「부정한 목적」 이 있는 것 등으로 판단하고 열람을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않도록 합니다.

기타 제 3 자로부터의 신청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제 3 자 행세를 하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열람 또는 교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기본대장카드 등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본인확인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합니다.

또한 가해자로부터의 의뢰를 받은 제 3 자로부터의 신청에 대해 열람 또는 교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이유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심사를 실시합니다.